

[홍콩] 2018년 6월 수출현안 · 수입제도 모니터링

I 수입제도 변경사항 / 수출현안

(통관/검역/라벨링*/수출현안)

□ 주요내용

○ 홍콩 중국 칭하이성(青海省) 다차이단(大柴旦) 행정구산 가금류 및 가금류 제품 수입 잠정 중단.

- 2018년 6월 22일, 홍콩 식품환경위생국 식품안전센터에 따르면 중국 칭하이성 다차이단 행정구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(H5N1) 발생
- 식품안전센터는 고병원성 조류독감 발생 시 기정한 대응 방안과 세계 보건기구(WHO)와 협조하여 관련 사안 면밀히 주시
- 식품 안전센터 대변인에 따르면 조류독감 발생 지역 내 반경 3 킬로미터 내의 식용 가금류 및 가금류 제품(계란 포함)을 90일 동안 수입 중지하고, 13 킬로미터 내의 지역은 21일 동안 수입 중지하기로 결정

□ 시사점

○ 홍콩은 가금류 및 돼지고기의 수출 관련 검역이나 위생 절차가 까다로운 편임. 과거 2016년 및 2017년 한국 조류독감 발생 시 경기도, 제주도 등 가금류 수입을 즉시 중단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함. 고온다습한 기후가 지속되는 여름철 수출식품의 안전성을 철저히 관리하여 통관 시 차질이 없도록 주의할 것

○ 출처 : 홍콩식품안전센터 (2018. 6. 22)

관련홈페이지 : <http://www.fehd.gov.hk/>

II 품목별 통관 일반사항 / 주의사항

□ 수출입 신고관련 주요내용

- 홍콩은 수출입 자유방임정책으로 수입물품에 대한 특별한 제한이 없음
 - 자유로운 물품거래와 간단한 수출입절차는 홍콩무역의 장점이며, 우수한 인프라로 수출입이 비교적 용이한 편
 - 전체 품목 가운데 97%이상이 비과세물품으로, B/L 등의 증빙서류를 지참하면 화주가 직접 화물 수취 가능
- 수입상품의 통관은 주로 송장(manifests)과 같은 서류검사로 이루어지며, 필요시 선택적 기준의 실질조사(physical examination)가 이뤄짐. 이 경우 선택된 물품은 관세청 담당자에 의해 조사 목적으로 보관될 수 있음

■ 선적 절차 ■

순서	절차
1	선적
2	수출입 신고서 제출 (수출 후 14일 이내)
3	화물 도착 통지
4	관세사나 통관 에이전트를 선정해 통관 대행 (필요 시)
5	수출완료

-자료원 : 홍콩 식품환경위생서

- 수출입시 어떤 품목이든 홍콩 세관 및 소비세국(HK Customs and Excise)의 감독관에게 해당품목의 수입 및 수출 후 14일 이내 관련사항을 신고해야 함
 - 신고는 도착신고(arrival declaration)와 수입신고(import declaration)로 아래의 주소에서 제공할 양식에 따라 작성하며
 - 홈페이지를 통한 신고도 가능, *e-form URL :
http://www.info.gov.hk/digital21/eform/english/about_e_form_01.html
- 대부분 상품은 신고 후 3~7일내 수입허가증이 발급됨.
 - 수입허가증 발급대상 품목의 경우는 수출입규정, 비축 물자 규정 등에 의해 홍콩 도착 7일 내에 수입허가증을 발급 받아야만 통관 가능
- 수출입 신고가 필요 없는 품목은 환적화물(일부 품목 필요), 자동차를 제외한 개인 휴대품, HK\$ 4,000(약 US\$ 513)미만의 우편물, 견본품, 광고목적의 HK\$ 1,000(약 US\$ 128) 미만의 수입품, 전시품, 스포츠 경기 참가용품, 증정품, 중고 공(空)컨테이너, 인가한 배에서 포획한 어류 등임
 - 신고면제품목의 경우 해당 면제품목의 카테고리를 적하목록(cargo manifest)에 분명히 명시하고 운송자(carriers/ forwarders)에게 고지
- 통관 시 기본적인 제출서류는 Bill of Entry (관세사나 통관 에이전트 작성), 상업 송장, 선화증권, 원산지 증명서(필요 시), 화물검사 증명서(필요시)임.
- 수입 신고서류는 송장(manifests), 선화증권, 항공화물운송장, 그 외 유사한 서류, 인보이스 또는 패킹리스트, 기타 수입 라이선스 서류 등임

III

통관문제사례

- 해당사항 없음